

해 양 수 산 부

훈계·통보 요구

제 목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존관리지침 수립업무 소홀

기 관 명 사하구

훈계대상자 사하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사하구 ○○○○과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등 ○○○○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하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섬 및 ○○○섬의 주변해역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2014년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생태계 조사,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최근 3년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

사업연도	사업비(천원)			주요 추진사업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714,800	500,000	214,800	
2014	286,000	200,000	86,000	관리위원회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홍보관 설계
2015	286,000	200,000	86,000	관리위원회 운영, 해양생태계조사,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 수립용역,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건립공사, 환경보호관리선 건조
2016	142,800	100,000	42,800	관리위원회 운영, 수산종묘매입방류, 해양생태계조사 등

특히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 2014. 12. 1.에 수립된 「○○섬, ○○○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차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매뉴얼이 필요함을 기술하면서 1차년도(2015년) 1순위 사업으로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 수립 용역 수행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하구는 2015년 해양보호구역(○○섬, ○○○섬) 우선사업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14. 12. 29.) 개최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 수립용역을 포함한 2015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상기의 【표 1】과 같이 확정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시행 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해역 및 육역 일대 보전관리 방안, 오염원 차단 및 쓰레기 수거 방안, 입도제한 기준 마련 방안 등을 과업으로 하는 용역을 【표 2】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 2】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 마련 용역 현황

사업연도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기관	금액(천원)
2015	○○섬, ○○○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 수립용역	‘15.11.24.~ ‘16.3.22.	○○대학교	19,000

따라서 사하구는 용역이 완료되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섬, ○○○섬 주변해역의 생태계 보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체 없이 해양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하구는 '16. 3. 22.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은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섬 및 ○○○섬 주변해역에 대한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하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섬, ○○○섬 주변해역 생태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조속히 생태환경 보전관리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